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http//www.mke.go.kr
자료문의 : 지식서비스과 장금영 과장(2110-4770), 강연주 사무관(4772)

이러닝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– 「이러닝산업 발전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최중경)는 6.30(목) 국회 본회의에서 「**이러닝산업 발전법」 개정안이 의결**되었다고 밝힘

○ 금번 개정은 '04년 법 제정 이후 **최초의 법률 개정**으로서 **그간 양적으로 확대**되어 온 **이러닝산업**이 **질적으로 고도화**될 수 있는 **기반을 마련**하기 위한 것임

*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 : ('04) 1.30조원 → ('10) 2.25조원, 연평균 약 10% 성장

□ 개정된 「**이러닝산업 발전법**」은 **▲이러닝 활용 촉진, ▲소비자 보호 시책 강화, ▲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**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함

【 이러닝 활용 촉진 】

○ 법률 제명을 **「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**하고, **이러닝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***함

* 이러닝진흥위원회(위원장: 지경부 제1차관) 부위원장으로 교과부 고위공무원 선임,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(기존: 정보통신산업진흥원)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추가

○ **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촉진**하기 위해 교과부장관이 교육기관의 **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·활용**과 **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**할 수 있도록 함

○ 나아가 **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**과 **근로자 능력 제고**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**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**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【 소비자보호 시책 강화 】

○ 이러닝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**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**을 **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**으로 규정함

○ **지경부장관**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**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권고**할 수 있도록 하고, 동 법에 따른 **재정·행정상의 지원** 시 **표준약관을 이행한 사업자를 우대**할 수 있도록 함

○ **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**간 **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**하기 위해 이러닝사업자에게 **시범학습기간**을 두도록 하고, 그 구체적인 방식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함

【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 】

○ 진입장벽이 낮은 **이러닝 시장**의 **투명성 확보**와 공공기관 등 **이러닝수요자 신뢰 제고** 등을 위해 **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**를 도입하였음

* '10년 신규기업 진입률: 21.4%, 사업중단률: 10.0% (2010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)

○ **공공부문 발주사업**에 대한 **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**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**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닝 개발사업 금액의 하한**을 정하여 고시하고,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□ 금번 「**이러닝산업 발전법**」 **개정**을 통해 **2조2천억원**('10년 기준)으로 추정되는 **이러닝 시장이 보다 활성화**될 것으로 전망됨

○ 또한 **자생력있는 중소이러닝사업자 육성**과 **소비자 신뢰 제고** 등을 통해 그간 **양적 성장에 치중**해 왔던 이러닝산업이 **질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**해질 것으로 기대됨

□ 지경부는 금일 통과된 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**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**할 계획임

○ 아울러 소비자보호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**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**해 나갈 예정이며, **관계부처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**할 예정임